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배원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등〉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09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09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자배원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등(안 제39조의8제4항 신설 등) ..	3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09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7. 16.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급증과 일부 과잉·장기 진료로 인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 기준 및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경상환자 심사지침 마련이 필수적임. 특히 해당 지침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진료 관련 통계자료 등의 연계·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관리 업무 등에 연계·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요청 및 활용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8).

Ⅲ. 검토의견

1. 자배원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등(안 제39조의8제4항 신설 등)

개정안은 자배원 원장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관련 통계 작성·연구 등을 위하여 심평원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관련 통계 작성 및 연구 등에 연계·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이하 “자료제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기관등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u><신 설></u>	⑥ 원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u><신 설></u>	⑦ 제5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방법·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⑧ 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라 함)의 설립 근거(제39조의3)¹⁾, 업무 범위(제39조의4²⁾), 자료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4(업무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항의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출요구(제39조의8³⁾)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환자에 대해 장기 입원 치료를 유도하는 등 과잉진료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⁵⁾.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심사 체계를 도입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6572호)하여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임.

하지만 현행 제39조의8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는 자배원의 검사 대상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으로 인한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경상환자 치료비는 2019년 1조원에서 2025년 1조 5,100억원으로 연평균 7.1% 증가하였음(국토교통부).

5) 보험연구원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 12~14급, 주로 염좌·타박)의 과잉진료 규모를 추정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일수를 기준으로 2019년 경상환자 진료비 1조원의 34.8%에서 3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전웅식,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분석 및 규모 추정 연구」, 보험연구원, 2022.5.).

기관인 공제사업자 등에 한정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 등이 보유한 진료 관련 자료(치료기간, 진료항목, 진료비 등)와의 연계가 필요함에도, 심평원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자동차보험환자의 진료 관련 통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개정안은 자배원 원장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관련 통계 작성·연구 등을 위하여 심평원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가명처리 후 제공받도록 하며, 가명정보 결합 처리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다음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첫째, 경상환자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자배원이 2026년 9월부터 수행 예정인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가 객관적·일관된 기준으로 운영되려면 치료기간, 진료비 수준 등 비교 기준 자료가 필요함.

현행법상 자배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법적 근거 마련은 이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법제화 할 수 있음.

현재 자배원과 심평원 간의 자료 공유는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율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자료 제공 거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셋째, 자료제공기관의 개인 정보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음.

개정안은 자배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가명정보 결합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료제공기관의 자료 제공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6)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목적 외 제공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인 자료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안 제39조의8제8항을 신설하면서 이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6)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⁷⁾.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현행 법령은 자배원이 보험회사 등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중으로, 공정한 검토 절차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관리 중인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 통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기관(자배원)에서 해당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동의함.

2)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경상환자 심사체계의 객관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자료 연계 필요성에는 공감함.

다만, 개정안의 자료 제공 목적이 다소 포괄적이므로 영 제11조의2

7)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에 따른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출 요청 항목과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 진료자료·개인정보를 목적이 다른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마련에 활용하는 것은 제도 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 진료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특히 이해관계자인 보험사·공제조합 중심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공적 자산인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의 공공성·목적적합성 및 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실손·생명보험 등 다른 민간보험으로 제공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음.

또한 자료제공 의무 대상기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의료기관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 수 있고, 제공 자료의 구체적 범위·활용기준·의료계 참여 및 검증 절차가 불분명하여 교통사고 환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진료 제한이나 진료비 삭감의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다만, 개정안의 자료 제공 목적이 다소 포괄적이므로 영 제11조의2에 따른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출 요청 항목과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과 같이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를 공유·활용하여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심사지침 마련 과

정에 관련 전문학회 및 의료계 전문가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심사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75